

의안번호	2207005
의 퇴 인	문대림의원
회 답 일	2025. 1. 20.
추계번호	24B63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의2 신설(국유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시설로서 <u>어촌계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거나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시설에 대하여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음(제1항)</u>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²⁾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5조의2 신설(국유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국유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특례(안 제15조의2 신설)

- 어촌계는 현행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조합원이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자치단체

1)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 **(목적)**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 도모
- **(현황)** 지구별수협 70개소에 소속된 어촌계는 2,067개소, 계원 수는 108,127명('23. 12. 31. 기준)

※ [참고자료 1] 지역별 어촌계 현황 참고

[표 1] 어촌계 현황: 2019~2023년

(각 연도말 기준, 단위: 개소,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어촌계 수	2,039	2,045	2,044	2,049	2,067
계원 수	124,462	121,989	108,754	109,483	108,127

주: 계원 수는 어촌계원과 준어촌계원을 합산한 숫자

자료: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4 어촌계현황조사」, 2024.10., 53~55쪽

□ 개정안에 따라 어촌계가 공익 목적 등에 사용하는 국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국고 수입감소가 예상됨

- **(무상 사용 허가 조건)** 어촌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시설로서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거나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을 목적으로 사용

□ 그러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어촌계 2,067개소('23년 말 기준)가 사용중인 국유재산 현황 및 사용료, 이 중 무상 사용 허가를 받게 될 국유재산 및 사용료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의 국유재산 사용 및 사용료 현황은

[참고자료 2] 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의 국유재산 및 사용료 납부 현황 참고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지역별 어촌계 현황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

<지역별 어촌계 현황: 2021~2023년>

(각 연도말 기준, 단위: 개소)

	2021	2022	2023
전국	2,044	2,049	2,067
부산광역시	50	50	51
인천광역시	59	60	60
울산광역시	29	29	29
경기도	53	54	54
강원도	74	74	74
충청남도	172	172	174
전라북도	65	65	65
전라남도	857	859	872
경상북도	147	147	147
경상남도	436	437	439
제주특별자치도	102	102	102

주: 각 연도 말 기준

자료: 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 「어촌계 현황조사」 (검색일: 2025.1.16.)

(해양수산통계 > 분야별통계 > 수산 > 수산정책 > [승인통계] 어촌계현황조사 > 어촌계 현황)
<<https://www.mof.go.kr/statPortal/stp/idx/main.do>>

2.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4년도 어촌계 현황조사 결과보고」, 2024.10.
3.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3년도 어촌계 현황조사 결과보고」, 2023.10.
4.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2년도 어촌계 현황조사 결과보고」, 2022.11.

[참고자료 2] 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의 국유재산 및 사용료 납부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최근 3년(2022~2024년)간 제주 지역 어촌계(총 102개소)가 사용중인 국유 재산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유재산) 장비보관시설, 해녀탈의장, 복합시설(탈의장 및 작업장) 등 92개소
 - (연간 사용료) 41백만원('24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의 국유재산 및 사용료 납부 현황: 2022~2024년>

(단위: 개소, 백만원)

제주도 어촌계 수	국유재산 유형	시설 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2022	2023	2024	합계
102	장비보관시설	16	7	7	10	24
	해녀탈의장	70	24	24	26	74
	복합시설(탈의장 및 작업장)	6	5	5	5	15
	합계	92	36	36	41	113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